

수입신고 항목 및 세관사무관리인제도의 개정

전자상거래(EC)가 확대됨에 따라 통신판매 주문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며 불법 마약이나 지식 재산권 침해 물품 등의 밀수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FS 이용 화물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저가 수입 신고로 관세를 면하는 탈세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에서 원활한 수입의 확보, 관세국경 단속의 실효성 확보 및 적절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FS(풀필먼트 서비스) 이용 화물이란】

EC 플랫폼 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구매자의 주문 접수에서 배송 완료까지의 일련의 작업 (주문, 재고 관리, 포장, 배송, 교환, 대금 회수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본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물

개정내용 (1) (2023 년 10 월 1 일 시행)

- 관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수입자 주소 및 성명'이 수입신고 의무화
- 수입신고시에 '수입자 주소 및 성명'이 의무화에 따라 '수입 신고자(화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지 명확화 ⇒ 뒷면 참조
- 세관사무관리인의 신고항목에 '신고자와 세관사무관리인의 관계'등의 추가 및 세관사무관리인 신고 시의 세관사무관리인과의 위임계약관계서류 제출
- 세관장이 비거주자 등에게 세관사무관리인의 선정·신고 등을 요청하고 비거주자가 기한까지 요청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이 비거주자의 일정의 국내 관련자를 세관사무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

개정내용 (2) (2025 년 10 월 12 일 시행)

수입신고 항목에 하기 항목을 추가

- 통신판매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통신판매 물품에 해당할 경우, 플랫폼의 명칭과 호칭 등
- 수입허가 후의 물품 운송처 소재지 및 명칭



수입 신고자 의미의 명확화

수입 신고자(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물품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책임을 가지고 적절한 수입신고를 해야만 하므로 관세법 기본통달의 규정에 따라 수입 신고자가 누구지 명확히 하였으니 수입신고 시 유의해 주십시오.

통달 개정 내용 (2023년 10 월 1 일 시행)

○ 수입 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기본통달 6-1(1)에 규정된 '물품을 수입하는 자' 와 동일하다.

○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점에 국내 인수 후 수입물품 처분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하며, 그 밖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포함한다.

[수입의 목적인 행위를 행하는 자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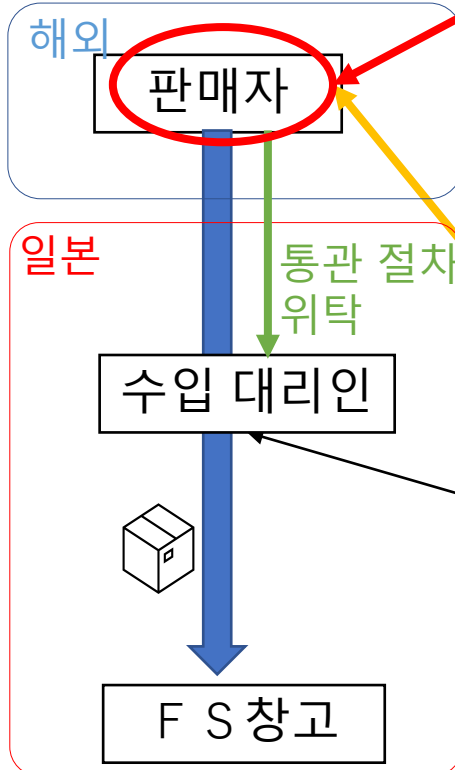
-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임차하고 사용하는 자.
- 위탁 판매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의 판매 위탁을 받아 자기(수탁자)명의로 판매하는 자
-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물품을 가공하거나 수리하는 자.
- 파기하기 위해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그 화물을 파기하는 자.

【수입 신고자가 변경되는 예】

개정 전(2023년 9월 30일 이전)



개정 후 (2023년 10월 1일 이후)



수입 신고자

비거주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세관사무관리인을 선임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절차를 위탁받은 수입 대리인은 수입 신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도 개정에 관한 정보 및 문의는 세관 홈페이지(오른쪽 QR 코드)를 참조하십시오.

세관 HP

